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16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부승찬·조계원·윤후덕

이정문 • 한정애 • 안규백

임오경 • 이개호 • 강선우

강대식 • 이재관 • 박민규

허 영·차지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 등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연구요원은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되 의무복무 기간(3년) 중 나머지 기간은 다른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도록 함.

그런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 위 논문을 완료하여 사실상 대학원에서 대상자에 대한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수여식 등 소속 대학원의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 되며,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3개월 이내)도 의무복무기 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사학위 취득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박사학위 수여를 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③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박사과정 전문연구	
요원"이라 한다)은 편입된 날	
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대통</u>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
	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에
	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u>본다.</u>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